

# 고성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18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의안 번호	646
----------	-----

## 1. 개정 이유

2000년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중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사무 정비와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분뇨등관련영업 허가시 영업구역을 고성군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대행계약 체결이 불요하며 아울러 행정규제적인 성격으로 규제사무완화 차원에서 삭제함.(안 제6조)
- 나. 규제사무완화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한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삭제함. (안 제9조제3항5호,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, 안 제14조, 안 제15조제3항)
- 다.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내용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(안 제8조, 안 제18조, 안 제21조)

## 3. 참고사항

- 0.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
- 0. 입법예고 : 결과 의견없음

## 4. 본문 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조례 제 호

### 고성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.

③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분뇨의 수집·운반을 분뇨등관련영업자가 수행한 경우 직접 징수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중 “분뇨수집·운반대행업자”를 “분뇨수집·운반업자”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8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의 대행)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를 함에 있어서 능률성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수집·운반 및 처리업무를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의 대행 계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행구역</li> <li>2. 대행기간</li> <li>3.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</li> <li>5.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③제1항의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수의 분</p>	<p>제6조 &lt;삭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노처리등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8조(부적정 오수처리시설등의 신고)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그 시설이 용량 및 제조업자의 표시 등을 하지 않은 부적정 제품이거나 유지관리 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사육제한 지역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제10조(허가절차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	<p>제8조 &lt;삭제&gt;</p> <p>제9조(사육제한 지역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&lt;삭제&gt;</p> <p>제10조(허가절차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③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	<p>③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에 의한다.</p>
<p>④가축사육허가를 받은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	<p>④ &lt;삭제&gt;</p>
<p>⑤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	<p>⑤ &lt;삭제&gt;</p>
<p>제11조(수수료의 부과징수)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에 관한 수수료 및 사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·징수한다</p>	<p>제11조(수수료의 부과징수)①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1. (생략)</p> <p>2.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수수료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4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(오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. <u>다만, 군수가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12조(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방법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처리장 처리비는 <u>분뇨수집·운반대행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시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를, 자체 청소 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군수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4조(<u>포탈된 처리비의 과징</u>) <u>사기,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</u>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수수료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분뇨의 수집·운반을 분뇨등관련영업자가 수행한 경우 직접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방법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분뇨수집·운반업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14조 &lt;삭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제15조(분뇨등 관련영업)            ① ~ ② (생략)            ③군수는 분뇨수거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인력, 장비, 설비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.</p> <p>제18조(청문)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    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준용한다.</p> <p>제21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,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</p>	<p>제15조(분뇨등 관련영업)           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&lt;삭제&gt;</p> <p>제18조 &lt;삭제&gt;</p> <p>제21조 &lt;삭제&gt;</p>